



KFA
Korea Football
Association

대한축구협회

등록규정

2025. 11. 25 개정

1
Play ON



- 1971. 2. 11. 제정
- 1971. 12. 30. 개정
- 1975. 3. 26. 개정
- 1979. 12. 16. 개정
- 1982. 4. 15. 개정
- 1983. 2. 17. 개정
- 1983. 11. 15. 개정
- 1984. 3. 3. 개정
- 1984. 11. 23. 개정
- 1985. 12. 2. 개정
- 1987. 11. 5. 개정
- 1988. 3. 12. 개정
- 1989. 12. 26. 개정
- 1992. 12. 28. 개정
- 1998. 4. 22. 개정
- 2002. 1. 24. 개정
- 2002. 7. 2. 개정
- 2003. 5. 19. 개정
- 2004. 9. 17. 개정
- 2005. 2. 14. 개정
- 2006. 3. 30. 개정
- 2007. 3. 30. 개정
- 2010. 1. 14. 개정
- 2010. 9. 30. 개정
- 2011. 1. 17. 개정
- 2011. 7. 5. 개정
- 2011. 10. 18. 개정
- 2012. 1. 13. 개정
- 2012. 4. 17. 개정
- 2013. 8. 19. 개정
- 2014. 8. 28. 개정
- 2014. 12. 10. 개정
- 2015. 11. 12. 개정
- 2016. 12. 20. 개정
- 2017. 1. 16. 개정
- 2017. 12. 26. 개정
- 2018. 2. 28. 개정
- 2018. 10. 12. 개정
- 2019. 6. 11. 개정
- 2019. 12. 19. 개정
- 2020. 9. 22. 개정
- 2021. 10. 05. 개정
- 2022. 12. 13. 개정
- 2023. 12. 19. 개정
- 2024. 05. 28. 개정
- 2024. 11. 12. 개정
- 2025. 11. 25. 개정



용어의 정의	6
제1장 총칙	10
제1조 (목적)	10
제2조 (대상)	10
제3조 (등록)	10
제4조 (등록의 효력 발생과 상실)	11
제5조 (등록 결격사유 등)	11
제6조 (대회 참가)	16
제2장 팀 등록	17
제7조 (등록 팀 구분)	17
제8조 (전문 축구 팀 등록)	18
제9조 (동호인 축구 팀 등록)	19
제3장 전문 축구 선수 등록	20
제1절 U12•U15•U18선수의 등록	20
제10조 (등록 원칙)	20
제11조 (등록 기간)	20
제12조 (선수의 연령 제한)	20
제13조 (연령 초과 선수의 등록)	20
제14조 (유급 선수의 승인)	21
제15조 (U18 선수의 계약 및 성인대회 출전에 관한 사항)	23
제2절 대학 선수의 등록	23
제16조 (등록 원칙)	23
제17조 (등록 기간)	23
제18조 (등록 제한)	23
제3절 K리그1, K리그2 선수의 등록	24
제19조 (등록 원칙)	24
제20조 (등록 기간)	24
제21조 (등록 절차)	25
제22조 (신인 선수의 등록)	25
제23조 (FIFA 에이전트)	26



제4절 WK리그 선수의 등록	26
제24조 (등록 원칙)	26
제25조 (등록 기간)	26
제26조 (등록 절차)	27
제27조 (신인 선수의 등록)	27
제5절 K3리그, K4리그 선수의 등록	27
제28조 (등록 원칙)	27
제29조 (등록 기간)	28
제4장 동호인 축구 선수 등록	29
제30조 (등록 원칙)	29
제31조 (등록 기간)	29
제32조 (선수의 연령 구분)	29
제5장 지도자·선수관리담당자·임원 등록	30
제33조 (등록 원칙)	30
제34조 (등록 기간)	30
제35조 (지도자 등록 기준)	30
제36조 (선수관리담당자 등록 기준)	31
제6장 국내 이적	32
제1절 전문 축구팀 간 이적	32
제37조 (U12•U15•U18 선수의 이적)	32
제38조 (U12•U15•U18 선수의 활동 개시)	32
제39조 (대학 이적 선수의 등록)	32
제40조 (K리그1, K리그2 이적 선수의 등록)	32
제41조 (K3리그, K4리그, WK리그 이적 선수의 등록)	33
제2절 동호인 축구팀 간 이적 등록	33
제42조 (U12•U15•U18 선수의 이적)	33
제43조 (U12•U15•U18 선수의 활동 개시)	33
제44조 (성인팀 이적 선수의 등록)	33
제45조 (성인팀 선수의 활동 개시)	34



제3절 전문 축구팀과 동호인 축구팀 간 이적 등록	34
제46조 (전문 축구팀과 동호인 축구팀 간 이적)	34
제47조 (전문 축구팀과 동호인 축구팀 간 이적 선수의 활동 개시)	35
제7장 국제 이적	36
제48조 (국제 이적 선수의 등록 원칙)	36
제49조 (국제이적확인서(ITC)의 요청)	36
제50조 (국제 이적 선수 등록의 유효)	36
제51조 (탈퇴, 계약 만료 또는 활동 종료 선수의 국제 이적)	37
제8장 등록 내용 변경 및 부당 등록	38
제52조 (등록 기재 내용의 수정)	38
제53조 (부당 등록의 정의)	38
제54조 (부당 등록의 시정)	38
제9장 선수 자격 심의 및 선수위원회 관련 사항	39
제55조 (선수위원회 구성)	39
제56조 (선수 구제)	39
제57조 (징계 등)	39
제58조 (부칙) / (기타)	39
부칙	40
별지 1. 외국 국적자 선수 등록시 제출 서류	45
별지 2. 등록비	46
별지 3. 등록 절차	47
별지 4. 프로 신인 육성지원금	49
별지 5. 대한축구협회 증명서 발급	52
별지 6. U18 선수의 계약 및 성인대회 출전에 관한 사항	55
별지 7. 만 18세 미만 선수의 FIFA MINOR 승인	56
별지 8. 임대 선수 수 제한	58



가나다순

가등록 : 본 규정상의 회원 자격을 충족하고 등록 신청하였으나 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 협회의 최종 승인 시 회원의 지위 부여가 가능한 상태

경기 출전 : 등록한 선수가 선발 또는 교체로 경기에 출전한 경우

관계단체 : FIFA, AFC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국제 이적 : 선수가 다른 국가 협회의 팀으로 그 소속팀을 변경하는 것

국제이적확인서(ITC, International Transfer Certificate) : 국제 이적을 위하여 기존 소속의 국가 협회가 새로운 소속 국가 협회에 발급해 주는 확인서

단체 : 학교, 재단법인, 사단법인, 주식회사,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기타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협회가 인정하는 단체

동호인 축구 선수 : 축구를 개인의 건강증진과 취미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

등록 : 협회 회원으로 가입하고 활동하기 위하여 팀·선수·지도자·선수관리담당자·임원이 등록 절차에 따라 신청하고 승인을 득하여 등록 회원의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협회가 인정한 경기·대회·리그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 상태

등록 기간 : FIFA ‘선수 지위와 이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거하여 협회가 등록을 위해 정한 기간

등록담당자 : 단체장(클럽)의 위임을 받아 선수 및 지도자, 임원 등의 등록, 이적, 탈퇴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온라인 등록시스템(joinkfa.com)에 필수 등록되어야 함



등록비 : 본 규정에 의거하여 협회 등록 회원으로 가입하고 활동하기 위하여 관할 시도 축구협회에 납부하는 연회비

등록 회원 : 본 규정에 의거하여 협회가 정한 자격을 충족하고 관련 등록 절차를 거쳐 축구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팀, 선수, 지도자, 선수관리담당자, 임원으로 구분

대회 : 협회가 ‘국내 대회 승인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승인한 축구 대회

리그 : 협회가 ‘국내 대회 승인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승인한 리그 방식의 축구 대회

미등록 : 기존 소속팀에 등록한 선수가 등록 유효 기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어느 팀에도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 (기존 소속팀으로 소속이 남아 있는 상태) 또는 선수가 기존 소속팀에서 탈퇴된 상태이지만 그 이후 어느 팀에도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 팀의 미등록이란 등록 승인을 받고 활동한 기존 팀이 당해 연도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

미소속 : 당해 연도 등록 승인을 득하였으나 현재 소속팀이 없는 상태

비 활동팀의 재등록 : 직전 연도에 미등록한 팀이 다시 당해 연도 활동 자격을 득하는 과정

선수 : 대회참가 등 축구 선수활동을 목적으로 협회에 등록한 사람

선수관리담당자 : 등록 회원의 자격을 충족한 지도자 외에 선수들의 체력 및 건강을 위하여 선수를 관리하는 사람

시도 축구협회 : 협회 회원단체로 협회 정관 제10조 따른 시도협회

온라인 등록 시스템(joinkfa.com) : 선수·지도자·팀·선수관리담당자·임원의 등록·이적·탈퇴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보의 투명성과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웹 기반 데이터 정보 시스템



유급 : 초·중·고 선수가 협회에서 인정한 사유로 상위 학년으로 진학하지 못하고 전년도 연령대에 재등록한 상태(제14조)

육성지원금 : 유소년 선수의 육성을 위하여 프로 신인 선수 등록 시 프로 구단에서 이마추어팀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제22조 및 별지4)

이적 : 선수가 다른 팀으로 그 소속팀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적 후 등록 절차를 별도로 진행

이적 출전 제한 : 선수의 이적으로 인하여 협회가 인정한 대회에 출전을 할 수 없는 기간 (제45조)

- 성인 동호인 축구팀 간의 이적(3개월 출전 제한)에 따른 경기 출전 가능일 예시

이적 신청일 또는 전소속팀 탈퇴일 중 빠른 날짜	경기 출전 가능일
2022. 2. 1.	2022. 5. 1.

임원 : 팀, 선수, 지도자, 선수관리담당자 이외의 등록 회원

전국연맹 : 협회 회원단체로 정관 제10조 따른 전국연맹

전문 축구 선수 : 축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또는 하고자 하는 사람

준회원 : 협회 ‘등록규정’에 명시한 등록 회원의 자격을 갖추기 전, 협회가 지정하는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협회 온라인 등록 시스템(joinkfa.com)에 가입한 사람

FIFA 에이전트 : 축구 에이전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FIFA의 승인을 받은 사람 (2023.10.01. 시행)

지도자 : 축구 지도자 활동을 목적으로 등록 회원의 자격(자격증·등록)을 충족하여 팀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



탈퇴 : 협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 회원이 탈퇴 승인을 득하여 더 이상 해당 팀의 소속이 아닌 상태

팀 : 등록 회원의 자격을 충족한 선수·지도자·선수관리담당자·임원을 구성하여 축구 활동에 참가하는 집합적 단위

팀 창단 : 협회 또는 산하단체의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사무국에 신청하여 팀 구성을 승인받는 것

팀 해체 : 등록 승인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체 승인을 받아 팀의 자격이 상실된 상태

활동 : 선수·지도자·선수관리담당자·임원으로서 협회가 인정한 경기·대회·리그에 참가 등의 활동을 하는 것

협회 :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

AFC : 아시아축구연맹

FIFA : 국제축구연맹

FIFA ID : FIFA가 각 협회, 팀, 선수에게 부여한 전 세계 고유 식별 ID

FIFA RSTP(Regulations on the Status and Transfer of Players) : 선수 지위와 이적에 관한 FIFA 규정

FIFA TMS : 11인제 축구의 프로와 아마추어 선수의 국제 이적, 각종 보상금 자동 지급 등을 위해 사용하는 FIFA 웹 기반 데이터 정보 시스템

KFA 등록증 : 등록한 선수·지도자·선수관리담당자·임원에게 발급되는 등록증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협회 선수·지도자·선수관리담당자·임원의 등록과 활동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본 규정은 협회에 등록된 선수·지도자·선수관리담당자·임원과 선수·지도자·선수관리담당자·임원의 등록·활동에 관련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적용한다.

제3조 (등록)

- ① 선수는 하나의 팀으로만 등록할 수 있다. 단, 동호인 축구 성인 팀에 한하여 각 대회 규정에 의거하여 각 시도, 시군구 연합팀의 대회 출전은 가능하다.
- ②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3에 기재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매년 등록을 해야 한다.
- ③ 온라인 등록 시스템(joinkfa.com)에 제출된 스캔 파일은 원본으로 인정된다.
- ④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4에 따른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및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제공하는 도핑방지 교육과 스포츠 인권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스포츠 인권 서약서, 축구인 윤리 헌장 및 신철 강령 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 ⑤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협회 온라인 등록 시스템(joinkfa.com)에 명시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대한 동의 등을 포함한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⑥ 협회는 선수·지도자·선수관리담당자·임원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제3자 제공 등에 대하여 동의를 득하여야 하며, 이를 미디어와 대회 운영과 관련된 제3자 등에 제공하고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⑦ 등록을 하려는 사람이 그 등록에 따라 소속될 팀은 미리 FIFA, AFC, 대한체육회의 각 등록 결격사유 및 본 규정상 등록 결격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⑧ 협회는 필요시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별도로 요구할 수 있다.
- ⑧ 외국 국적자가 선수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1의 서류를 제출한 후 협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협회는 필요시 별지 외의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⑨ 선수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2의 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등록의 효력 발생과 상실)

- ① 등록의 유효 기간은 승인일로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하되, 다음 해 2월 내 등록하는 회원의 경우 다음 해 등록 승인일의 전일까지로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등록 효력이 상실된다.
 1. 팀 해체에 따른 등록 해지 요청을 협회가 승인한 경우(단, 팀에 대한 분쟁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협회는 이를 보류할 수 있다.)
 2. 전문 축구 등록 팀이 당해 연도 협회가 주최·주관한 대회나 리그에 한 번도 참가하지 않은 경우 팀은 차년도 등록 전 해체 공시 되며 다음 해 등록할 수 없다.
- ③ 기존 전문 축구 등록 팀이 정기 등록 기간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등록 기간 종료 이후 15일 이내에 협회는 팀 해체를 공시한다.

제5조 (등록 결격사유 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전문 축구 선수로 등록할 수 없다.
 1. 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제명의 징계를 받은 사람 또는 등록금지,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2. 관계단체로부터 제명의 징계를 받은 사람 또는 등록금지,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아래의 조치를 받고 해당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단, 같은 조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병과 시 중한 조치 적용
 - 가.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3개월
 - 나.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 3개월
 - 다. 학교에서의 봉사 : 5개월
 - 라.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8개월
 - 마. 사회봉사 : 8개월
 - 바. 출석정지 : 10개월
 - 사. 학급교체 : 10개월
 - 아. 전학 : 12개월



4.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의 죄를 범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9호의 퇴학처분 조치를 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제5조 제1항 제4호 이외의 사유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9호의 퇴학처분 조치를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관계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48조 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
 7. 관계단체로부터 해임 징계를 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9. 축구 관련 비리 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FIFA, AFC, 체육회의 관계 규정에 따른 등록 결격 사유 등이 있는 사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동호인 축구 선수로 등록할 수 없다.
1. 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제명의 징계를 받은 사람 또는 등록금지,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2. 관계단체로부터 제명의 징계를 받은 사람 또는 등록금지,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아래의 조치를 받고 해당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단, 같은 조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병과 시 중한 조치 적용
 - 가.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3개월
 - 나.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 3개월
 - 다. 학교에서의 봉사 : 5개월
 - 라.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8개월
 - 마. 사회봉사 : 8개월
 - 바. 출석정지 : 10개월
 - 사. 학급교체 : 10개월
 - 아. 전학 : 12개월
4.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의 죄를 범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9호의 퇴학처분 조치를 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제5조 제2항 제4호 이외의 사유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9호의 퇴학처분 조치를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관계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48조 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
7. 관계단체로부터 해임 징계를 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9. 축구 관련 비리 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FIFA, AFC, 체육회의 관계 규정에 따른 등록 결격 사유 등이 있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도자·선수관리담당자·임원

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제명의 징계를 받은 사람 또는 등록금지,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3. 관계단체로부터 제명의 징계를 받은 사람 또는 등록금지,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축구 관련 비리 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벌금형을 선고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9. 체육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체육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들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
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5. 관계단체로부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격정지 1년 이
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가. 폭력·성폭력

나. 승부조작

다. 편파판정

라. 횡령·배임

16. 관계단체로부터 해임 징계를 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7. FIFA, AFC, 체육회의 관계 규정에 따른 등록 결격 사유 등이 있는 사람

④ 등록을 하려는 선수, 지도자, 선수관리담당자, 임원의 소속 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결격사유 유무를 그 등록에 앞서 확인하여야 하며, 결격사유 발견 시
관할 시도 축구협회(연맹)을 통해 협회로 15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협회의 추가 확인 요청시, 소속 팀은 협회가 요구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협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협회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선수·지도자·선수관리담당자·
임원의 등록이 추후 발견되었을 시 해당자는 공정위원회에 회부된다.

⑥ 등록 절차를 마친 선수·지도자·선수관리담당자·임원이 등록 이후 등록금지, 제명,
자격정지 등의 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등록을 즉시 해지한다.



제6조 (대회 참가)

등록 팀은 협회가 승인하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은 대회는 참가할 수 없다.
단, 등록팀의 초등(U12) 4학년(만 10세) 이하 선수는 예외로 한다.



제7조 (등록 팀 구분)

① 다음 각 호와 같이 팀을 구분한다.

구분	전문 축구		동호인 축구
	남자	여자	
유청소년	U12	U12	U12
	U15	U15	U15
	U18	U18	U18
성인 (O19)	대학 (U리그 등)	대학	대학
	일반 (K3, K4리그 등)	일반 (WK리그 등)	일반
	프로 (K리그1, K리그2)		여성 직장

※ 전문 축구 남자 팀에 여자 선수 등록이 가능하고, 동호인 축구 팀의 경우 성별 구별 없이 등록 가능하다. 동호인 축구 유청소년팀은 하위 연령의 선수를 등록할 수 있다.

② 팀명 등록 시 아래 기준을 적용한다.

구분	내용
국문	1. 클럽 팀은 학교명을 사용할 수 없다. 2. 기 등록 팀명과 해체 팀명 등은 사용할 수 없다. 3. 띄어쓰기, 특수문자 및 부호(괄호, 점 등)의 사용은 불가하다.
영문	1. 학교, 지역 명은 공식 기관의 영문 표기법을 준용한다. 2. 팀 명 앞에는 시도 약자를 표기하여야 한다(별도 안내). 3. 특수문자 및 부호는 사용할 수 없으나, 띄어쓰기는 사용 가능하다. 4. U18 클럽 팀에는 팀 명 마지막에 연령을 표기하여야 하며, U12, U15, U18로 표기법을 통일한다. 5. 영문 팀 명(SHORT)은 각 단어의 첫 글자(대문자)로 형성하며, FC는 유지한다.



제8조 (전문 축구 팀 등록)

① 등록하고자 하는 팀은 다음 각 호를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1. 팀 대표자(만 19세 이상 성인)
2. 본 규정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협회 인증 해당 급 지도자 (감독) 1인 이상
3. 본 규정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선수(학교팀이 타학교에 재학 중인 선수를 등록 및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 협회가 별도로 정하는 절차 및 지침에 따른다.)
4. 선수 등록 최소 인원

팀 구분	남	여
U12	10명	10명
U15	16명	14명
U18	18명	14명
O19(성인팀)	18명	18명

5. 등록비 (별지 2)

- ② 팀 등록시 팀 대표자, 단장, 행정(체육부장, 스카우트, 통역 등)등의 경우 팀의 임원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필요시 해당 대회와 리그 사무국에서 자격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팀은 별지 3에 명시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 ③ 하나의 단체는 제7조 제1항에 따른(팀)구분 별 한 개 팀을 초과하여 등록할 수 없다.
- ④ 협회는 필요시 추가로 등록 요건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협회는 등록된 팀이 7월 추가 등록 종료일 까지 제1항의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해당 팀을 해체할 수 있다.
- ⑥ 직전연도에 등록된 팀은 매년 정기 등록 기간 내에 등록을 해야 한다. 단, 신규팀의 등록과 비 활동 팀(당해 연도 해체팀 제외)의 재등록은 매년 5월 추가 등록 기간일까지 가능하며 해당 팀은 당해 연도 1회 이상 협회가 승인하거나 인정한 대회나 리그에 참가하여야 한다.
- ⑦ 제6항에 따라 등록된 팀이라 할지라도 협회는 해당 대회 규정에 따라 대회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팀은 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협회가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제9조 (동호인 축구 팀 등록)

- ① 등록하고자 하는 팀은 다음 각 호를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 1. 단체장(만 19세 이상 성인)
 - 2. 지도자 1인 이상(만 19세 이상 성인)
 - 3. 결격 사유가 없는 선수
 - 가. U12·U15·U18 : 1명 이상
 - 나. 성인(O19) : 11명 이상
 - 4. 등록비(별지 2)
- ② 등록하고자 하는 팀은 시군구 축구협회·시도 축구협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③ 팀 등록시 팀 대표자, 단장, 회장 등의 경우 팀의 임원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필요시 해당 리그, 대회 사무국에서 자격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팀은 별지 3에 절차와 내용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 ④ 협회는 필요시 추가로 등록 요건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팀의 등록 시기는 직전연도에 시도 축구협회가 요청하고, 협회가 승인한 기간으로 한다.



제1절 U12•U15•U18선수의 등록

제10조 (등록 원칙)

대표자 명의로 팀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매년 관할 시도 축구협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1조 (등록 기간)

등록 기간은 정기 등록 기간과 추가 등록 기간으로 구분된다.

1. 정기 등록 기간은 매년 1월부터 3월 중 협회가 지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추가 등록 기간은 5월, 7월, 8월, 9월 중 협회가 지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5월은 2주 이내, 7월은 4주 이내, 8월 및 9월은 각 2주 이내로 정함)
3. 토·일요일, 법정 공휴일, 근로자의 날, 협회 휴무일은 제외된다.
4. 예외 조항
 - 가. 신규 등록 선수에 한하여 매월 초 기준 협회 근무일 3일간 등록할 수 있다.
 - 나. 팀 해체 등의 사유로 새로운 팀에 등록하고자 하는 선수는 등록 기간과 상관없이 등록할 수 있다.
 - 다. 등록 기간 중에 개최되는 대회에 참가할 경우 대회 규정 등에 따라 협회가 지정하는 대회 참가 신청 마감일까지 선수 등록을 마쳐야 한다.
 - 라. 등록 기간 내 국제 이적 또는 분쟁 조정 등과 같은 절차를 거치고 있는 선수는 해당 절차의 결과에 따라 등록 기간 종료 후에도 등록 및 대회(리그)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2조 (선수의 연령 제한)

- ① U12는 만 12세 이하, U15는 만 15세 이하, U18은 만 18세 이하의 연령으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연령의 기준은 출생연도 1월 1일 자를 기준으로 한다.
- ② 유급 선수 및 연령 초과 선수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선수의 연령은 제1항을 기준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 (연령 초과 선수의 등록)

제12조의 연령 제한에도 불구하고 적령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못하여 연령이 초과된 선수는 시도 축구협회에 등록 신청서 제출 시 최초 입학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여 협회의 승인을 득한 후 등록할 수 있다.

제14조 (유급 선수의 승인)

① 유급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등록할 수 있다.

1. 제2항의 유급에 따른 등록 승인 사유에 해당하는 유급 또는 재수한 사람
2. 유급 및 재수의 횟수는 선수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1회에 한한다.

② 유급에 따른 등록 승인 사유

1. 가정 사유로 인한 유급

가정 빈곤 등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유급한 사람

2. 질병으로 인한 유급

부상·질병으로 인해 국·공립 종합병원 및 보건복지부 승인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단, 진단일이 명확하게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치료 기간 중 대회에 출전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승인하지 않는다.

가. 72일 이상 입원 치료한 경우, 3개월 이상의 진단서 및 그 증빙을 제출하여 협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

나. 입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한 병명으로 6개월 이상의 진단과 치료를 받은 경우, 6개월 이상의 진단서 및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협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

3. 조기 입학으로 인한 유급

초등학교에 조기(만 7세 이전) 입학한 사람

4. 해외로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유급

부모의 이민, 부모의 근무지 변경, 부모의 학업 및 기타 선수위원회가 인정한 사유로 부모와 동반하여 해외로 거주지를 옮긴 후 18개월 이상 해당 국가에 연속적으로 체류한 후 다시 국내 학교로 입학 시 유급한 사람. 단, 국내에 방문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국내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경우는 해외 해당 국가에서 연속적으로 체류한 것으로 본다.

5.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유급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또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서 피해를 인정 받아



유급한 사람

③ 제출 서류

1. 가정 사유로 인한 유급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 생활기록부(교육행정정보시스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시도축구협회 유급승인 요청 공문

2. 질병으로 인한 유급

진단서(국·공립 종합병원 또는 보건복지부 승인 종합병원에서 발행) 및 제14조 제2항 제2호에 근거한 치료 증빙 서류(진료기록부), 생활기록부(교육행정정보시스템), 시도 축구협회 유급승인 요청 공문

3. 조기 입학으로 인한 유급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최초 입학 기록 확인), 유급한 급의 생활기록부(교육행정정보시스템), 시도 축구협회 유급 승인 요청 공문

4. 해외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유급

부모와 선수의 출입국 사실증명서, 부모와 선수의 거주지 사실증명서, 해외 현지에서의 부모 재직증명서·재학증명서·이민허가서류 또는 부모의 해외 체류와 관련된 비자(이민, 취업, 유학 등), 해외 현지에서의 선수 재학증명서(공인된 학교) 또는 성적증명서(한국어 번역 공증), 선수의 국내 생활기록부(교육행정정보시스템), 선수의 국내 재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시도 축구협회 유급승인 요청 공문

5.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유급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또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결과통보서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 유급한 급의 생활기록부(교육행정정보시스템), 시도 축구협회 유급 승인 요청 공문

④ 서류 제출

1. 유급하고자 하는 선수는 제14조 3항에 제3항에 따른 서류 및 소속팀 단체장(학교장 또는 클럽 대표자) 명의의 유급 확인 공문 등의 서류를 시도 축구협회에 제출하고 협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시기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
2. 협회의 추가 요청 시, 협회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경기 출전 제한

1. 유급 선수로 등록한 선수는 유급 연도에 최종 출전한 경기일 다음날부터 1년 동안 출전이 제한된다.
2. 팀은 연령 초과 선수를 2명까지 대회(리그)에 참가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 (U18 선수의 계약 및 성인대회 출전에 관한 사항)

U18 선수의 계약 및 성인리그 출전에 관한 사항은 별지 6을 준용한다.

제2절 대학 선수의 등록

제16조 (등록 원칙)

총·학장 명의로 팀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매년 관할 시도 축구협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7조 (등록 기간)

등록 기간은 정기 등록 기간과 추가 등록 기간으로 구분된다.

1. 정기 등록 기간은 매년 1월부터 3월 중 협회가 지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추가 등록 기간은 5월, 7월, 9월 중 협회가 지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3. 토요일, 법정 공휴일, 근로자의 날, 협회 휴무일은 제외된다.
4. 예외 조항

가. 팀 해체, 군 전역(90일 이내 요청시) 등의 사유로 등록하고자 하는 선수는 등록 기간과 상관없이 등록할 수 있으며, 시도 축구협회를 통해 문서 접수 후 등록한다.

나. 등록 기간 중에 개최되는 대회에 참가할 경우 대회 규정 등에 따라 협회가 지정하는 대회 참가 신청 마감일까지 선수 등록을 마쳐야 한다.

다. 등록 기간 내 국제 이적 또는 분쟁 조정 등과 같은 절차를 거치고 있는 선수는 해당 절차의 결과에 따라 등록 기간 종료 후에도 등록 및 대회(리그)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8조 (등록 제한)

- ① 대학 선수는 현 소속 대학 및 학과의 학제상 기본 학기수를 초과하여 등록할 수



없다. 선수의 활동 학기 계산시에는 전 소속 학교들의 등록 기록을 포함하여 계산하며, 모든 대학 선수는 8학기를 초과하여 선수로서 활동할 수 없다.

- ② 팀은 교육부 인가 학과 및 학기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 후 대학 선수의 학기를 적용한다.
 - 1. 4년제 대학(학과) 재학 선수
 - : 전 소속 등록 기록 포함 최대 8학기
 - 2. 3년제 대학(학과) 재학 선수
 - : 전 소속 등록 기록 포함 최대 6학기
 - 3. 2년제 대학(학과) 재학 선수
 - : 전 소속 등록 기록 포함 최대 4학기
- ③ 해당 학교의 대학원, 평생교육원, 어학센터(어학당) 등의 재학 중인 사람은 등록할 수 없다.
- ④ 휴학 중인 사람은 등록할 수 없다.
- ⑤ 군 복무 중인 사람은 등록할 수 없다. 단, 병역 면제 특례자로서 입소하여 소집 교육을 받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
- ⑥ 각기 다른 대학을 혼합하여 등록하거나, 동일 재단의 다른 학교를 혼합하여 등록할 수 없다.

제3절 K리그1, K리그2 선수의 등록

제19조 (등록 원칙)

- ① 대표자 명의로 매년 프로축구연맹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② 프로축구연맹의 각 규정에 따라 구단과 정식 계약한 선수에 한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일을 기준으로 경기 출전이 가능하다.
- ③ 해당 리그에 등록하는 선수는 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본 규정을 적용받는다.

제20조 (등록 기간)

등록 기간은 정기 등록 기간과 추가 등록 기간으로 구분된다.



1. 정기 등록 기간은 매년 1월부터 3월 중 프로축구연맹이 요청하고 협회가 승인한 기간으로 하되, 최소 8주, 최대 12주 내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2. 추가 등록 기간은 프로축구연맹이 정하고 협회가 승인한 기간으로 하되, 최소 4주, 최대 8주 내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3. 토·일요일, 법정 공휴일, 근로자의 날, 협회 휴무일은 제외된다. 정기 등록과 추가 등록 기간의 합은 16주를 초과할 수 없다.
4. 예외 조항
 - 가. 팀 창단 또는 해체, 군 전역·군 복무(90일 이내 요청시) 등의 사유로 등록하고자 하는 선수는 등록 기간과 상관없이 등록할 수 있으며, 프로축구연맹을 통해 문서 접수 후 등록한다. 병역복무 복귀 선수의 등록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여 등록이 불가능할 경우, 주말 또는 공휴일 전 업무일에 등록 신청을 통한 가 등록이 가능하다.
 - 나. 등록 기간 중에 개최되는 대회에 참가할 경우, 대회 규정 등 협회가 지정하는 대회 참가 신청 마감일까지 선수 등록을 마쳐야 한다.
 - 다. 등록 기간 내 국제 이적 또는 및 분쟁 조정 등과 같은 절차를 거치고 있는 선수는 해당 절차의 결과에 따라 등록 기간 종료 후에도 등록 및 대회(리그)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제21조 (등록 절차)

- ① 온라인 등록 시스템(joinkfa.com)의 별도 안내에 따른다.
- ② 프로축구연맹의 각 규정에 따른 제출 서류는 프로축구연맹의 심의를 득하여야 한다.
- ③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프로축구연맹을 통해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22조 (신인 선수의 등록)

- ① 선수는 이적확인서를 입단 희망팀에 제출해야 한다.
- ② 해당 구단은 선수의 이적확인서 사본 1부를 등록 시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 ③ 해당 구단은 프로 신인 선수 육성지원금 지침(별지 4)에 따라 각 아마추어팀에 육성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3조 FIFA 에이전트

선수나 팀이 FIFA 에이전트 서비스 이용을 통해 선수의 고용 계약 또는 이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계약서에 관련 FIFA 에이전트 서비스를 제공한 에이전트의 이름과 서명을 포함해야 한다.
2. 선수 또는 팀과 FIFA 에이전트의 대리계약 서류를 해당 계약서에 첨부해야 한다.
3. FIFA 에이전트로 등록되지 않은 에이전트가 대리한 계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4. 선수나 팀이 FIFA 에이전트로 등록되지 않은 에이전트를 통해 계약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회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5. 본 조에 포함하지 않은 사항은 FIFA · KFA 'FIFA Football Agent Regulations' 및 협회의 '에이전트 규정'을 따른다.

제4절 WK리그 선수의 등록

제24조 (등록 원칙)

- ① 대표자 명의로 팀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매년 관할 시도 축구협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② 한국여자축구연맹의 각 규정에 따라 구단과 정식 계약한 선수에 한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일 기준으로 경기에 출전이 가능하다.
- ③ 여자 일반팀의 등록은 WK리그 팀의 등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25조 (등록 기간)

등록 기간은 정기 등록 기간과 추가 등록 기간으로 구분된다.

1. 정기 등록 기간은 매년 1월부터 3월 중 한국여자축구연맹이 요청하고 협회가 승인한 기간으로 하되, 최소 8주, 최대 12주 내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2. 추가 등록 기간은 7월 중 한국여자축구연맹이 정하고 협회가 승인한 기간으로 하되, 최소 4주, 최대 8주 내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3. 토·일요일, 법정 공휴일, 근로자의 날, 협회 휴무일은 제외된다. 정기 등록과 추가 등록 기간의 합은 16주를 초과할 수 없다.

4. 예외 조항

가. 팀 창단 또는 해체, 군 전역·군 복무(90일 이내 요청시) 등의 사유로 등록하고자 하는 선수는 등록 기간과 상관없이 등록할 수 있으며, 시도 축구협회를 통해 문서 접수 후 등록한다.

나. 출산휴가 기간 종료 시(90일 이내 요청 시) 등록 기간 외 등록 가능하다.

다. 출산휴가 여성 선수의 대체 선수 등록은 등록 기간 외 등록 및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라. 등록 기간 중에 개최되는 대회에 참가할 경우 대회 규정 등 협회가 지정하는 대회 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선수 등록을 마쳐야 한다.

마. 등록 기간 내 국제 이적 또는 분쟁 조정 등과 같은 절차를 거치고 있는 선수는 해당 절차의 결과에 따라 등록 기간 종료 후에도 등록 및 대회(리그)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제26조 (등록 절차)

온라인 등록 시스템(joinkfa.com)의 별도 안내에 따른다.

제27조 (신인 선수의 등록)

선수는 이적확인서를 입단 희망팀에 제출해야 한다.

제5절 K3리그, K4리그 선수의 등록

제28조 (등록 원칙)

① 대표자 명의로 팀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매년 관할 시도 축구협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K3리그, K4리그의 각 규정에 따라 선수 등록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9조 (등록 기간)

등록 기간은 정기 등록 기간과 추가 등록 기간으로 구분된다.

1. 정기 등록 기간은 매년 1월부터 3월 중 협회가 지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최소 8주, 최대 12주 내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2. 추가 등록 기간은 협회가 정한 기간으로 하되, 최소 4주, 최대 8주 내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3. 토·일요일, 법정 공휴일, 근로자의 날, 협회 휴무일은 제외된다. 정기 등록 과 추가 등록 기간의 합은 16주를 초과할 수 없다.
4. 예외 조항
 - 가. 팀 창단 또는 해체, 군 전역(90일 이내 요청시) 등의 사유로 등록하고자 하는 선수는 등록 기간과 상관없이 등록할 수 있으며, 시도 축구협회를 통해 문서 접수 후 등록한다.
 - 나. 등록 기간 중에 개최되는 대회에 참가할 경우 대회 규정 등에 따라 협회가 지정하는 대회 참가 신청 마감일까지 선수 등록을 마쳐야 한다.
 - 다. 등록 기간 내 국제 이적 또는 분쟁 조정 등과 같은 절차를 거치고 있는 선수는 해당 절차의 결과에 따라 등록 기간 종료 후에도 등록 및 대회(리그)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제30조 (등록 원칙)

단체장(클럽 대표자) 명의로 팀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며, 매년 해당 시군구 축구협회와 시도 축구협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31조 (등록 기간)

- ① 각 시도 축구협회에서 지정하는 기간에 실시한다. 단, 토·일요일, 법정 공휴일, 근로자의 날, 협회 휴무일은 제외된다.
- ② 등록 기간 내 국제 이적 또는 분쟁 조정 등과 같은 절차를 거치고 있는 선수는 해당 절차의 결과에 따라 등록 기간 종료 후에도 등록 및 대회(리그)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제32조 (선수의 연령 구분)

- ① 선수의 연령은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각 출생 연도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출생자는 동일 연령이다.)
- ② 유소년(U12·U15·U18) 연령 초과 선수는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여 시도 축구협회가 최종 승인한 사람에 한하며, 등록과 활동상의 연령 차이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전문 선수로 이적하고자 하는 연령 초과 선수는 제14조에 따라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33조 (등록 원칙)

- ① 신규 또는 변경 등록은 온라인 등록 시스템(Joinkfa.com)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지도자는 본 규정 제35조 지도자 등록 기준이 적용된다.
- ② 전문 축구팀의 지도자는 2개 이상의 전문 축구팀에 중복 등록이 불가하나 동호인 축구팀에 중복 등록이 가능하다.

제34조 (등록 기간)

지도자·선수관리담당자·임원은 등록 기간과 상관없이 등록할 수 있다.

제35조 (지도자 등록 기준)

지도자는 다음 각 항에 따라 해당 급에 한하여 등록이 가능하다.

① 전문 축구 팀의 지도자 등록 기준

등록구분	지도자(감독)	지도자(코치)	GK코치	피지컬 코치
U12	AFC C급(KFA 3급)	KFA D급(4급)	GK Lv 1	피트니스 Lv1
U15 U18	AFC B급(KFA 2급)	AFC C급(KFA 3급)	GK Lv 1	피트니스Lv1
대학 성인	AFC A급(KFA 1급)	AFC B급(KFA 2급)	GK Lv 2	피트니스 Lv2
K리그1 K리그2	AFC P급(KFA P급)	AFC A급(KFA 1급)	GK Lv 3	피트니스 Lv2
				피트니스 Lv3 (2027부터적용)

1. 팀은 해당하는 급의 자격증 소지자 감독 1명을 반드시 등록하여야 한다.
- ② 동호인 축구팀의 지도자 등록 기준 : 만 19세 이상
(단, 대회 참가 자격은 해당 대회 규정에 따른다.)



제36조 (선수관리담당자 등록 기준)

주치의, 의무는 아래 명시된 자격을 가진 사람에 한하여 등록이 가능하다.

1. 주치의 : 의료법에 따른 의사, 한의사
2. 의무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건강운동관리사, 선수트레이너, 운동처방사, 간호사



제1절 전문 축구팀 간 이적

제37조 (U12•U15•U18 선수의 이적)

- ① 당해 연도 U12•U15•U18 선수의 이적은 등록 기간 내 연간 2회(최종 소속팀의 해체로 인한 이적은 제외)에 한하여 가능하다. 단, 제56조 제2항에 따라 선수위원회가 선수 구제 의결을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② 동일 또는 타 시도 축구협회의 팀으로 이적할 경우 소속팀 단체장(학교장 또는 클럽 대표자)의 이적 확인과 해당 시도 축구협회의 이적 확인이 필요하다.
- ③ 최종 소속팀의 탈퇴 승인 완료일로부터 30개월이 경과하여 새로 등록하는 선수는 이적의 확인이 없어도 등록을 할 수 있다.
단, 2027년 1월 1일부터 최종 소속팀의 탈퇴 승인 완료시 선수는 이적 절차 없이 신규 팀에 등록을 할 수 있다.
- ④ 이적 요청 다음 날부터 7일이 경과할 때까지 이적 단계의 승인자의 응답이 없는 경우는 확인된 것으로 진행된다.
- ⑤ 팀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수의 이적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제38조 (U12•U15•U18 선수의 활동 개시)

- ① 전문 축구 팀 내 이적시 이적 출전 제한을 받지 않는다.
- ② 선수의 활동 개시 시기를 대회 규정으로 별도 공지할 수 있다.

제39조 (대학 이적 선수의 등록)

- ① 이적시에는 소속팀 총·학장의 이적확인이 필요하다.
- ② 이적 요청 다음 날부터 7일이 경과할 때까지 이적 단계의 승인자의 응답이 없는 경우는 확인된 것으로 진행된다.
- ③ 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수의 이적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 ④ 선수의 학기 중 이적은 불가하며, 연 1회 이적 등록이 가능하다.

제40조 (K리그1, K리그2 이적 선수의 등록)

- ① 프로 선수의 대학 이적은 프로구단의 확인이 필요하고 남은 학사과정에 따라 등록이 가능하며, 졸업 후 원 소속팀으로 복귀하여야 한다.
- ② 프로팀 간의 이적은 ‘프로축구연맹 선수 규정’에 준한다.



제41조 (K3리그, K4리그, WK리그 이적 선수의 등록)

- ① 선수는 계약 기간 내 이적시 소속팀 단체장의 이적 확인이 필요하다.
- ② 계약 기간이 종료되거나 클럽과 선수 간 양자 합의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선수는 자유계약 선수로 이적이 가능하다.
- ③ 선수의 대학 이적은 입학 및 편입학 등록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 ④ 이적 요청 다음 날부터 7일이 경과할 때까지 이적 단계의 승인자의 응답이 없는 경우는 확인된 것으로 진행된다.

제2절 동호인 축구팀 간 이적 등록

제42조 (U12•U15•U18 선수의 이적)

- ① 다른 팀으로 이적할 경우 소속팀 단체장(학교장 또는 클럽 대표자)의 이적 확인과 소속 시군구 축구협회 및 시도 축구협회의 이적 확인이 필요하다. 단, 동일 시군구 팀으로 이적할 경우에 시도 축구협회의 이적 확인 없이 이적 할 수 있다.
- ② 최종 소속팀의 탈퇴일로부터 30개월이 경과하여 새로 등록하는 선수는 이적의 확인이 없어도 등록을 할 수 있다.
- ③ 이적 요청 다음 날부터 7일이 경과할 때까지 이적 단계의 승인자의 응답이 없는 경우는 확인된 것으로 진행된다.
- ④ 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수의 이적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제43조 (U12•U15•U18 선수의 활동 개시)

동호인 축구팀에서 동호인 축구팀으로 이적할 경우 출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44조 (성인팀 이적 선수의 등록)

- ① 다른 팀으로 이적할 경우 소속팀 단체장(학교장 또는 클럽 대표자)의 이적 확인과 소속 시군구 축구협회 및 시도 축구협회의 이적 확인이 필요하다. 단, 동일 시군구 팀으로 이적할 경우에 시도 축구협회의 이적 확인 없이 이적할 수 있다.
- ② 최종 소속팀의 탈퇴 승인 완료일로부터 30개월이 경과하여 새로 등록하는 선수는 이적의 확인이 없어도 등록을 할 수 있다.
단, 2027년 1월 1일부터 최종 소속팀의 탈퇴 승인 완료시 선수는 이적 절차



- 없이 신규 팀에 등록을 할 수 있다.
- ③ 이적 요청 다음 날부터 7일이 경과할 때까지 이적 단계의 승인자의 응답이 없는 경우는 확인된 것으로 진행된다.
- ④ 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수의 이적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제45조 (성인팀 선수의 활동 개시)

- ① 동호인 축구 내 다른 팀으로 이적할 경우 이적 신청일 또는 전 소속팀 탈퇴일(시도 축구협회 승인 완료 일자)로부터 3개월 동안 출전을 제한한다. 단, 대회(리그) 규정 출전 자격을 명시할 경우 해당 대회(리그)의 규정을 따른다.
- ② 해체된 팀에서 이적한 선수는 협회가 팀 해체를 승인한 날로부터 출전이 가능하다. 단, 대회(리그) 규정의 출전 자격을 명시할 경우 해당 대회(리그)의 규정을 따른다.

제3절 전문 축구팀과 동호인 축구팀 간 이적 등록

제46조 (전문 축구팀과 동호인 축구팀 간 이적)

- ① 전문 축구팀에서 동호인 축구팀으로의 선수 이적은 당해 연도 연1회에 한하여 허용된다. 동호인 축구팀에서 전문 축구팀으로의 당해 연도 선수 이적 횟수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 ② 전문 축구팀에서 동호인 축구팀으로 이적할 경우에는 소속팀 단체장(학교장 또는 클럽 대표자)의 이적확인과 소속 시군구 축구협회와 시도 축구협회의 이적확인이 필요하다.
- ③ 동호인 축구팀에서 전문 축구팀으로 이적할 경우에는 소속팀 단체장 (학교장 또는 클럽 대표자)의 이적 확인과 소속 시도 축구협회의 이적 확인이 필요하다.
- ④ 최종 소속팀의 탈퇴 승인 완료일로부터 30개월이 경과하여 새로 등록하는 선수는 이적의 확인이 없어도 등록을 할 수 있다.
단, 2027년 1월 1일부터 최종 소속팀의 탈퇴 승인 완료시 선수는 이적 절차 없이 신규 팀에 등록을 할 수 있다.



- ⑤ 이적 요청 다음 날부터 7일이 경과할 때까지 이적 단계의 승인자의 응답이 없는 경우는 확인된 것으로 진행된다.
- ⑥ 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수의 이적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제47조 (전문 축구팀과 동호인 축구팀 간 이적 선수의 활동 개시)

- ① 동호인 축구팀에서 전문 축구팀으로 이적할 경우 이적 출전 제한을 받지 않는다.
- ② 유청소년 전문 축구팀에서 유청소년 동호인 축구팀으로 이적한 경우에도 이적 출전 제한을 받지 않는다.
- ③ 전문 축구팀에서 성인 동호인 축구팀으로 이적의 경우 전 소속팀 탈퇴일 또는 이적 신청일 기준으로 대회(리그) 규정 출전 자격을 명시할 경우 해당 대회(리그)의 규정을 따른다.



제48조 (국제 이적 선수의 등록 원칙)

- ① 국제 이적 선수의 등록은 협회가 해당 선수가 소속되었던 이전 국가 협회로부터 국제이적확인서(ITC)를 수령한 후에 가능하다.
- ② 국제 이적 선수 중 외국 국적자를 협회에 등록하려는 팀은 별지 1(외국 국적자 선수 등록 시 제출 서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만 18세 미만의 선수의 국제 이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예외 승인에 관한 절차는 FIFA RSTP를 따른다.
- ④ 국제 이적과 관련하여 FIFA RSTP가 본조에 우선하며, FIFA RSTP가 개정될 경우 본조에도 불구하고 FIFA RSTP의 해당 조항이 적용된다.

제49조 (국제이적확인서(ITC)의 요청)

- ① 다른 국가 협회에 등록이 된 선수가 국내 팀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국내팀은 협회가 지정한 등록 기간 내에 협회에 선수에 대한 국제이적확인서(ITC) 발급 요청해야 한다.
- ② 협회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다른 국가 협회로부터 국제이적확인서를 발급받아 협회에 등록하는 것은 불가하다.
- ③ 만 18세 미만의 선수의 국제 이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FIFA RSTP 제19조에 의거하여 MINOR 에 대한 예외 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1. 외국인 또는 한국인이 해외에서 선수 등록한 후 협회 등록 팀에 이적하고자 하는 경우
 2. 외국인이 협회 등록 팀에 최초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3. 만 10세 미만 선수의 경우는 협회에서 자체 승인 가능하나, 기존의 MINOR 승인 절차 및 요건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별지 7(만 18세 미만 선수의 FIFA MINOR 승인) 참조
- ④ 등록 상태인 선수의 경우 등록팀의 승인후 ITC는 발급된다. 전소속 탈퇴 완료된 선수의 경우 별도 승인 없이 ITC는 발급된다.

제50조 (국제 이적 선수 등록의 유효)

- ① 국제 이적 선수의 등록은 해당 선수가 소속되었던 국가 협회가 발급한



국제이적확인서(ITC)를 협회가 수신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 ② 국제이적확인서(ITC)를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은 협회가 정한 등록 기간 마감일 업무 종료 시각까지이며, 국제이적확인서(ITC)가 등록 기간이 지나서 수신되더라도 수신일을 기점으로 등록이 유효하다.
- ③ 협회가 국제이적확인서(ITC) 발급을 요청한 날로부터 72시간 이내에 FIFA TMS를 통해 해당 선수가 소속되었던 국가 협회로부터 관련 회신을 받지 못할 경우, 협회는 해당 선수를 임시 등록할 수 있다.
- ④ 임시등록 후 1년 이내에 해당 선수가 소속되었던 국가 협회가 국제이적확인서 (ITC)발급 거부에 대한 타당한 사유를 밝히고 FIFA가 최종적으로 승인할 경우 해당 선수에 대한 협회의 등록은 취소된다.
- ⑤ 협회가 국제이적확인서(ITC) 발급을 요청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도 해당 국가 협회로부터 관련 회신을 받지 못할 경우, 협회는 해당 선수를 정식 등록 할 수 있다.
- ⑥ 해외로 이적한 선수가 다시 국내 팀으로 이적할 경우 본 규정에서 정한 이적 출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51조 (탈퇴, 계약 만료 또는 활동 종료 선수의 국제 이적)

- ① 다른 국가 협회가 선수를 등록하기 위하여 협회에 국제이적확인서(ITC) 발급을 요청할 경우, 협회는 선수가 등록된 이전 소속팀에 이적 확인을 요청하고 협회가 최종 확인 후 국제이적확인서(ITC)를 해당 국가 협회에 발급한다.
- ② 시도 축구협회가 이미 승인한 탈퇴 선수의 국제 이적은 이전 소속팀의 이적 확인 없이 협회가 바로 국제이적확인서(ITC)를 해당 협회로 발급한다.
- ③ 프로 선수로서 소속팀과의 계약이 만료된 날로부터 30개월이 지난 선수, 또는 아마추어 선수로서 활동이 종료된 날(최종 출전일)로부터 30개월이 지난 선수는 FIFA의 규정에 따라 이전 소속팀의 이적 확인 없이도 국제 이적이 가능하다.
- ④ 위 제3항의 활동 종료 기간은 선수가 이전 소속팀의 공식 경기에 마지막으로 출전한 날로부터 산정한다.
- ⑤ 위 제1항에 따라 협회는 다른 국가 협회와 국제 이적 확인 절차를 진행한다.



제52조 (등록 기재 내용의 수정)

등록 및 이적 기재 내용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팀은 등록 기간 내에 수정을 신청해야 한다. 협회가 근거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팀은 이를 이행해야 한다.

제53조 (부당 등록의 정의)

부당 등록이란 선수나 팀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다른 주체에 의하여 부당하게 등록(이적, 탈퇴 등) 되었거나 이중으로 등록된 경우를 말한다.

제54조 (부당 등록의 시정)

제53조의 부당 등록의 경우 발견 즉시 이의를 신청 할 수 있으며, 협회는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후 확인을 거쳐 해당 단체에 결과를 통보하고, 공정위원회에 회부한다.



제55조 (선수위원회 구성)

팀/선수의 등록 및 활동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선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회가 정한다.

제56조 (선수 구제)

- ① 부당한 이적 확인 거부 등 선수 구제와 관련된 사항 발생 시 선수위원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② 선수위원회가 인정한 선수 권익 침해 사유로 신청된 사항을 심의할 수 있으며, 선수위원회가 선수 구제를 의결한 경우 해당 선수는 본 규정에서 정한 선수의 이적 횟수 제한 및 이적 출전 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57조 (징계 등)

등록과 관련된 징계 사유 또는 분쟁 등이 발생 시 협회는 선수위원회나 공정위원회의 등 관계 규정 및 결정 사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58조 (부칙) / (기타)

선수의 지위 및 이적에 관련한 규정은 FIFA RSTP에 근거한다.



부 칙(2005. 2. 14.)

1. 규정의 채택과 효력

- (1) 본 규정은 2005년 2월 14일 개최된 대한축구협회 이사회에서 채택되었다.
- (2) 본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허가받지 않은 등록 업무의 금지

-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거나 허가받지 않은 어떠한 개인, 단체도 선수 등록 업무에 관여할 수 없다.
- (2) 위 1항을 위반하여 선수 등록에 관여할 경우 본회는 해당자에게 적절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3. 규정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

본 규정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이나 불가항력적인 사항의 경우는 협회 이사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부 칙(2010. 1. 14.)

제1조 (시행일)

- ① 본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제32조 (이적 선수의 등록) ③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 제5조 (지도자의 등록) ②항 1호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9. 30.)

1. 규정의 채택과 효력

- (1) 본 규정은 2010년 9월 30일 개최된 대한축구협회 이사회에서 채택되었다.
- (2) 본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2011. 1. 17.)

1. 규정의 채택과 효력

- (1) 본 규정은 2011년 1월 17일 개최된 대한축구협회 이사회에서 채택되었다.



(2) 본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2011. 7. 5.)

1. 규정의 채택과 효력

(1) 본 규정은 2011년 7월 5일 개최된 대한축구협회 이사회에서 채택되었다.

(2) 본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2011. 10. 18.)

1. 규정의 채택과 효력

(1) 본 규정은 2011년 10월 18일 개최된 대한축구협회 이사회에서 채택되었다.

(2) 본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2012. 1. 13.)

제1조 (시행일)

① 본 규정 중 개정된 사항은 이사회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8. 20.)

제1조 (시행일)

① 본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8. 28.)

제1조 (시행일)

① 본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2. 10.)

제1조 (시행일)

① 본 규정중 개정된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승인을 득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1. 12.)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타)

본 규정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이나 불가항력적인 사항의 경우는 협회 선수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부 칙(2016. 12. 20.)

제1조 (시행일)

본 규정 중 변경된 사항은 이사회 승인을 받아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 16.)

제1조 (시행일)

본 규정 중 변경된 사항은 이사회 승인을 받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17. 12. 26.)

제1조 (시행일)

본 규정 중 변경된 사항은 이사회 승인을 받아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2. 28.)

제1조 (시행일)

본 규정 중 변경된 사항은 이사회 승인을 받아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0. 12.)

제1조 (시행일)

본 규정 중 변경된 사항은 이사회 승인을 받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2018년 정기 등록까지 두 개의 팀을 등록한 단체에 대한 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 전에 2018년 정기 등록까지 두 개의 팀을 등록한 단체(U-12, U-15팀)는 본 규정 시행일부터 2021년도 등록까지 제7조 ③항의 개정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두 개 팀까지 등록할 수 있다. 본 경과조치의 적용을 받는 단체는 2022년도 등록부터 제7조 ③항의 개정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2019. 12. 19.)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12월 19일부터 시행된다. 단, 제37조 ①항과 ④항 2호는 2020년 1월 1일부터, 제22조 ①항 및 ②항과 제27조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부 칙(2020. 9. 22.)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0년 9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제2조 (준회원 제도 도입)

협회는 준회원 제도를 별도로 운영 할 수 있다.

제3조 (등록의 효력 발생과 상실 예외)

대한체육회장, 대한축구협회장, 시도단체장 선거가 있는 해에는 선거인후보자 추천시까지 등록된 자에 한하여 회장 선거일까지 선거인단 자격이 있다.

부 칙(2021. 10. 05.)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10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6조, 제45조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2. 13.)

제1조 (시행일)

본 규정 중 변경된 사항은 이사회 승인을 받아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부 칙(2023. 12. 19.)

제1조 (시행일)

본 규정 중 변경된 사항은 이사회 승인을 받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부 칙 (2025. 11. 25.)

제1조 (시행일)

본 규정 중 변경된 사항은 이사회 승인을 받아 2025년 11월 25일부터 시행된다.
단, 제5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3호는 이사회 승인일의 다음 날부터 이루어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시행한다.

제2조 (임대 선수 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별지8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① U12·U15·U18

- 첫 등록일 경우, FIFA MINOR 승인 확인 필요
별지 7(만 18세 미만 선수의 FIFA MINOR 승인) 별도 확인
- 기존 등록일 경우, 전 소속팀의 이적확인서
- 국제이적확인서(ITC) (축구 선수로서 첫 등록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 생활기록부 사본 (제13조 연령 초과 선수 또는 조기입학 선수의 경우 제출)

② 대학

- 여권
- 외국인 등록증(비자 D-2)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비자D-2) 사본
- 재학증명서
- 국제이적확인서(ITC)

③ K리그1, K리그2, K3리그, K4리그, WK리그

(사증 발급을 위한 서류 - 이력서, 고용계약서, 외국인선수 보유 현황, 여권사본)

- 여권 사본
- 외국인등록증(비자 E-6)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비자 E-6) 사본
- 계약서 사본
- 국제이적확인서(ITC)



① 전문 축구

구분		팀	선수
U12		300,000원	10,000원
U15			
U18			
성인	K리그1, K리그2	400,000원	
	K3리그, K4리그		
	WK리그		
	대학		

② 동호인 축구

구분	팀	선수
U12·U15·U18	시도(시군구) 축구협회 기준	10,000원
성인		

1. 등록비는 온라인 등록 시스템 (joinkfa.com) 및 시도 축구협회·시군구 축구협회 등록 업무와 축구 보급을 위하여 사용된다.
2. 납부처는 해당 시도 축구협회이다.
3. 등록비는 연1회 납부하며, 전문 축구팀으로 이적 시 이적 신청비가 발생한다.
(이적으로 인한 등록, 등급 변경으로 인한 등록 시에도 등록비를 납부해야 한다.)
4. 등록비는 환급이 불가하니 오류 및 과오납에 유의해야 한다.

이적 신청비

구분 (IN팀 기준)	선수
전문 축구로 이적시	10,000원
동호인 축구로 이적시	10,000원 (유예)



① 전문 축구 회원

전문 축구 회원	①	- joinkfa.com에 본인인증(본인명의 휴대전화, 아이핀) 회원가입 후 로그인 - 팀에 등록 신청 및 등록업무 대리위임 등 각종 동의
팀	②	- 등록 사항 입력(등록담당자/지도자/선수관리담당자/임원) - 등록 사항 입력(선수) 선수정보 업로드(대학 재학증명서, 신상정보, 사진 등) - 시도 축구협회 승인 요청
시도 축구협회	③	- 최종 승인 - (시·도 체육회 직인 날인) 등록 신청서 보관
팀	④	- 발급받은 가상 계좌에 등록비 입금(팀, 선수)
	⑤	- 등록 완료 [대회(리그) 참가 신청 가능, 등록 신청서 출력 가능]

② 동호인 축구 회원

동호인 축구 회원	①	- joinkfa.com에 본인인증(본인명의 휴대전화, 아이핀) 회원가입 후 로그인 - 팀에 등록 신청 및 등록업무 대리위임 등 각종 동의
팀	②	- 등록 사항 입력(등록담당자/지도자/선수관리담당자/임원) - 등록 사항 입력(선수) 선수정보 업로드 (신상정보, 사진 등) - 시군구 축구협회 승인 요청
시군구 축구협회	③	- 1차 승인 (등록 정보)
팀	④	※ ②과정에서 협회가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시도 축구협회	⑤	- 2차 최종 승인
팀	⑥	- 발급받은 가상 계좌에 등록비 입금(선수)
	⑦	- 등록 완료 [대회(리그) 참가 신청 가능]

* 팀, 선수, 지도자, 선수관리담당자, 임원 등은 단체장으로부터 대표로 위임받은 등록담당자를 통하여 등록해야 한다.

* 지도자의 등록과 탈퇴는 연중 가능하고 해당 시도 축구협회의 승인 절차를 따른다.



- * 임원의 등록과 탈퇴는 연중 가능하고 해당 팀의 승인 절차만 필요하다.
- * K리그1, K리그2 회원의 등록/이적/탈퇴는 협회와 프로축구연맹이 정한 별도의 절차를 따른다.
- * 신규/이적/유급 선수 등록에 관한 요건, 유의사항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등록 시스템(joinkfa.com)의 매뉴얼에서 확인할 수 있다. (joinkfa.com 공지사항, 헬프센터에서 다운로드 가능)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협회 이사회가 정한 기준에 의거 당해 연도에 프로 신인 선수로 계약 후 등록을 완료한 선수를 대상으로 해당 프로 구단에서 선수가 만 12세부터 만 21세까지 등록되어 있던 팀의 축구 발전을 위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이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 ① 프로 신인 육성지원금(이하 육성지원금)과 관련하여 협회가 특별히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본 규정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은 협회 선수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제3조 (업무 절차)

- ① 협회는 해당 아마추어팀에게 해당 선수와 관련된 육성지원 금액을 통보하고 입금 받을 등록된 팀명의 계좌를 제출받은 후 해당 프로구단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한다. 해당 프로 구단은 협회가 정한 기한 내에 해당 계좌로 육성지원금을 납입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협회에 결과를 전달하여야 한다.
- ② 프로 구단 산하팀의 경우 육성지원금 지급 조항이 명시된 협약을 협회로 제출하여 지급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4조 (지급 시기)

해당 프로 구단은 당해 연도 등록한 신인 선수가 등록되었던 아마추어팀에게 협회가 정한 업무 절차에 따라 아마추어 전문 축구 정기 등록 마감 후 30일 이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지급 비율)

협회 이사회 결의에 의해 산정된 기준에 의거 만 12세부터 만 21세까지 등록되어 있던 팀에 아래와 같은 비율로 지급한다.



<지급 비율(%)>

만 12세 생일을 맞는 시즌 :	5% (총 연봉 50%의 5%)
만 13세 생일을 맞는 시즌 :	5% (총 연봉 50%의 5%)
만 14세 생일을 맞는 시즌 :	5% (총 연봉 50%의 5%)
만 15세 생일을 맞는 시즌 :	10% (총 연봉 50%의 10%)
만 16세 생일을 맞는 시즌 :	10% (총 연봉 50%의 10%)
만 17세 생일을 맞는 시즌 :	10% (총 연봉 50%의 10%)
만 18세 생일을 맞는 시즌 :	10% (총 연봉 50%의 10%)
만 19세 생일을 맞는 시즌 :	15% (총 연봉 50%의 15%)
만 20세 생일을 맞는 시즌 :	15% (총 연봉 50%의 15%)
만 21세 생일을 맞는 시즌 :	15% (총 연봉 50%의 15%)

- ① 시즌중 이적시 ‘n/12개월’으로 지급 비율을 정하되, 등록 기간이 4개월 미만일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며, 9개월 이상일 경우 1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단, 추가 등록 기간에 등록한 신인 선수의 경우 당해 연도 소속된 아마추어팀은 9개월 미만 일 경우에도 1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② 만 21세 이전에 프로 신인으로 입단한 경우 잔여 금액을 등록된 아마추어팀에게 일정 비율에 따라 추가 분배한다.
- ③ 아마추어팀이 프로 산하팀인 경우 해당 프로 구단과 아마추어팀 간 협약을 기준으로 한다.
- ④ 선수의 입단 연도 전문 축구 정기 등록 기간 마감(동호인 축구 3월말)을 기준으로 전 소속팀의 미등록 또는 팀 해체(협약 관계 종료), 팀 법인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의 사유로 지급이 불가할 경우 협회 유소년 축구기금으로 활용한다.
- ⑤ 선수의 국제이적 기간(해외 아마추어 클럽에 등록한 기간)은 본 조에 따른 육성지원금 지급 기간에서 제외하고, 해당 기간은 FIFA Clearing House를 통해 지급한다. 단, 미등록 기간에 한하여 해당 기간은 청구하지 않는다.



제6조 (산정 기준)

- ① 자유선발 일반 및 우선지명 선수 : 1년차 기본급의 50%
 - 단, 자유선발(S) 선수 : 2,500만 원
- ② 해당 연도의 K리그2 구단이 선발한 선수의 육성지원금은 ①항 기준의 50%로 한다.
- ③ 자유선발 일반 선수 중 계약기간 1년 이하 이면서 프로축구연맹 선수 규정에서 정한 최저 기본급연액 선수의 경우는 육성지원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제7조 (지급 불이행에 따른 조치)

해당 프로 구단은 육성지원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을 시 지급 이행 시점까지 선수의 등록을 금지한다. 또한 지속적인 불이행 상태이거나 지급 불이행 반복 시 행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팀 · 선수 · 지도자의 등록 확인, 협회가 인정한 국내 대회 참가 및 경기실적, 협회를 대표하여 참가한 국제 대회 소집 및 경기 실적 등을 위해 발급되는 증명서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제2조 (적용 대상)

본 규정의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협회에 등록한 팀 (전문/동호인)
2. 협회에 등록한 전/현직 전문축구 선수
3. 협회에 등록한 전/현직 전문축구 지도자
4.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 가족 (가족 관계 확인후 발급)

제3조 (종류)

① 협회 증명서 종류는 아래와 같다.

- 팀 : 등록증명서(기본), 등록증명서(소속선수 포함), 경기실적증명서
- 선수 : 등록증명서, 등록증명서(풋살), 경기실적증명서(개인출전시간)
리그실적증명서, 대회참가증명서, 경력증명서,
각급대표팀증명서(확인서), 각급대표팀 소집확인서, 상무추천서,
대한축구협회 승인 대회 및 리그(경기실적증명서(개인출전시간),
리그실적증명서, 대회참가증명서)
- 지도자 : 자격증증명서, 경력증명서, 실적증명서
대한축구협회 승인 대회 및 리그실적증명서

② 증명서 발급 비용은 협회 온라인 등록시스템(joinkfa.com) 공시된 내용에 따른다.

제4조 (신청 방법 및 발급 절차)

증명서는 온라인 등록 시스템(Joinkfa.com)에서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발급처의 승인을 거쳐 발급된다.

제5조 (발급처)

증명서는 협회가 발급하며, 시도 축구협회 및 전국연맹은 해당 단체의 주최/주관



대회에 한하여 별도의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제6조 (발급 기준)

협회는 보관된 등록 기록 및 경기 실적을 근거로 증명서를 발급하며 발급 기준은 아래와 같다. 미확인된 실적 및 경력은 신청자가 증명할 의무가 있으며, 미 확인시 발급이 불가하다.

1. 전국대회 전문축구(U12, U15, U18, 대학, 성인일반) : 협회주관대회
 - 단, 대한체육회 승인 대회와 대한축구협회 승인 대회로 구분하여 발급이 가능하다. 협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대회별 발급 유무를 구분한다.
 - 가. 대회 참가 증명
 - 나. 대회 실적 증명 : 대회 출전 기록을 기준으로 발급
(출전경기수, 출전시간 등)
 - 다. 대한축구협회 승인리그 참가증명, 리그실적 증명(출전경기수, 출전시간 등)
2. 리그 전문축구 : 협회 주관리그 (초중고 주말리그, U리그, 왕중왕전, WK리그, K3-K4리그)
 - 가. 리그 참가 증명
 - 나. 리그 실적 증명 : 리그 출전 기록을 기준으로 발급 (출전경기수, 출전시간 등)

※ 8인제로 운영되는 U12 대회 및 리그의 증명서에는 플라잉(수시)교체로 인하여 출전 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
3. 각급대표 증명 : 협회를 대표하여 파견된 국제 대회 각급 대표 실적 또는 소집여부 확인
4. 상무 추천서 : 협회 등록 선수로서 상무 지원 대상자
5. 팀 : 대한축구협회 승인 대회 및 리그 경기실적증명서

제7조 (변경 요청)

- ① 다음 각 호의 팀, 선수, 지도자는 온라인 등록 시스템(Joinkfa.com)에 등록된 경기실적 등 정보에 대해 변경이 필요할 경우 협회에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선수/지도자 본인
 - 가. 본인 경기기록이 누락된 경우



나. 본인 경기기록에 오류가 있거나 부정확한 경우

2. 팀

가. 경기기록 등록 시 오류가 포함된 경우

나. 경기기록 등록 후 경기결과가 변경/조정된 경우

② 변경 요청은 해당 시도 축구협회에 신청한다.

제8조 (변경 처리)

① 선수가 신청한 변경요청은 해당 시도 축구협회에서 접수하여 신청 내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검토 확인한다.

1. 신청 내역의 타당성

2. 필요 증빙자료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경험적인 자료, 진술서, 소속팀 공문 등)

② 경기실적 변경 요청은 시도 축구협회의 심의를 거쳐 증빙자료와 함께 협회로 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③ 협회는 시도 축구협회가 신청한 변경요청에 대하여 공문, 증빙자료, 변경내역을 검토한 후 승인 또는 반려할 수 있다.

④ 각 단계별 처리 과정에서 처리가 불가한 사유가 발견된 경우 신청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기타)

본 규정에 다루지 않은 사항은 협회에서 결정한다.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협회가 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U18선수의 계약 및 성인 대회 출전에 관한 사항으로 유청소년 선수들의 기량 향상과 국내 축구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프로 구단이 운영하는 U18팀(이하 프로 산하 U18팀) 소속 선수 중 당해 연도 만 16세 도달하는 선수부터 만 18세 이하 선수에 적용된다.

제3조(계약 사항)

- ① 선수의 계약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만 18세가 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 ② 계약 기간 중 프로 구단은 선수에게 소정의 기본급 연액을 지급해야 한다.
- ③ 프로축구연맹은 프로 구단과 계약 체결 사실 확인과 함께 해당 계약서 및 소속 학교장 동의서 등 협회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4조(출전 사항)

- ① 선수는 등록일 기준으로 1회 이상 FIFA, AFC, 협회, 프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성인 대회 공식 경기에 출전한 경우, 협회가 승인한 U18 대회에서 프로 산하 U18 팀 간의 경기에 한하여 출전할 수 있다.
- ② 선수가 성인대회에 출전한 경우 해당 현황을 출전 이후 10일 이내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기타)

상기 사항의 적용 세칙은 프로축구연맹이 협회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제1조 (목적)

FIFA의 RSTP에 따라 만 18세 미만 선수의 국제 이적 또는 외국 국적자 선수의 국내 최초 등록을 예외적으로 허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 ① 다른 국가 협회에 등록된 만 18세 미만의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국내 클럽으로 이적하고자 하는 경우
- ② 다른 국가 협회에 등록된 이력이 없는 만 18세 미만의 외국인이 국내 클럽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③ 만 10세 미만의 선수는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승인하나, FIFA MINOR 승인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3조 (신청 가능 경우)

- ① 선수의 부모가 축구 외적인 사유로 국내로 이적한 경우
- ② 5년 이상 한국에 연속적으로 거주한 외국국적의 선수가 최초 등록하는 경우

제4조 (신청 시기 및 서류)

- ① 클럽은 협회가 지정한 등록 기간 내에 관할 시도 축구협회에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 기간 내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건이 등록 기간 종료 후 승인되더라도 해당 클럽에 등록 및 리그 또는 대회에 참가신청이 가능하다.
- ② ‘제3조’에 따른 신청 가능 경우별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구분		서류
공통		① 선수 출생 증명서 ② 선수 여권사본 ③ 클럽의 공문 (국, 영문) - 최초등록/국제이적 명시
추가 서류	선수의 부모가 축구 외적인 사유로 이주	① 부친 및 모친의 여권 사본 ② 부친 및 모친의 고용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③ 부친 및 모친의 거주 증명 - 거소사실증명서 등
	선수가 5년 이상 국내 거주	① 5년 이상 거주에 대한 증빙 - 거소사실증명서 등 ② 선수의 생활기록부



- ③ FIFA 승인 대상의 경우(만 10세 ~ 18세 미만) 제2항에 명시된 모든 서류를 영문으로 제출하여야 하나, 협회 승인 대상의 경우(만 10세 미만)는 국문으로 제출 가능하다.

제5조 (신청 결과의 통보)

- ① 협회는 FIFA로부터 통보받은 MINOR 승인 신청에 대한 결과를 해당 클럽의 관할 시도 축구협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시도 축구협회는 즉시 클럽에 그 결과를 전달하여야 한다.
- ② 협회는 클럽의 만 10세 미만의 선수에 대한 MINOR 승인 건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승인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협회 공문으로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기타)

본 별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FIFA RSTP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조(목적)

FIFA의 ‘선수의 지위와 이적에 관한 규정’(RSTP; Regulations on the Status and Transfer of Players)에 따라 국내 ‘임대 선수 수의 제한’을 설정하여 임대 선수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임대는 프로 선수에 한하여 가능하며, 모든 성별 및 내외국인 선수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3조(임대 기간)

최소 기간은 두 등록 기간 사이의 기간이며, 최대 기간은 1년이다. 단, 횟수 제한 없이 임대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제4조(구단별 인원 제한)

- ① 임대 IN 최대 6명, 임대 OUT 최대 6명
- ② 특정 클럽과 최대 3명까지 임대 IN/OUT 가능하다.
- ③ 남성, 여성 팀을 모두 보유한 클럽은 각각 6명으로 제한한다.

단, 만21세가 되는 시즌(전소속 클럽 기준)이 끝나기 전이면서 ‘Club-Trained Player’* 자격인 선수의 임대는 임대 제한 수에서 제외한다.

* Club-Trained Player : 프로 선수가 만15세부터 만21세 사이 소속 구단에 연속적 또는 비연속적으로 3시즌 또는 36개월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며, 선수의 신분(프로/아마)과 클럽의 카테고리와의 무관합니다.

제5조(기타)

FIFA RSTP 규정이 개정되어 본 별지8의 내용과 FIFA RSTP의 개정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FIFA RSTP가 우선하여 적용된다.